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08. 10.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 | |
|--------------------|---|
| I. 제 출 배 경 | 1 |
| II. 작 성 방 향 | 3 |
| ① 공 직 선 거 법 / 3 | |
| ② 정당법·정치자금법 / 6 | |
| III. 개 정 의 견 | 9 |

공 직 선 거 법

- ①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등 선거참여 확대
 - 1. 재외선거제도 도입 / 9
 - 2. 국내거주 재외국민 등의 선거참여 보장 / 14
 - 3.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15

② 자유롭고 선진화된 선거운동 구현

1. 온·오프라인 쌍방향 선거운동 활성화 / 18
2. 선거운동 주체·방법의 확대 / 20
3. 미디어 이용 선거운동 활성화 / 24
4. 선거운동 규제의 합리적 조정 / 27

③ 정책선거 풍토 조성 및 유권자의 알권리 신장

1. 정책·공약의 비교광고 신설 / 31
2.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31
3. 전과기록 제출·공개범위 확대 / 32
4. 장애인을 위한 별도(1종)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등 / 33
5. 예비후보자등록시 학력증명서 제출 / 33
6.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및 반환제도 도입 / 34

④ 선거의 자유 확대에 따른 공정성 강화

1.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확대 등 / 36
2.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강화 / 36
3.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제한대상직의 합리적 조정 / 37

㉔ 선거비용제한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

1. 선거비용 범위의 명확화 / 38
2. 보전비용 등 환수의 형평성 확보 / 40
3. 기탁금 반환제도 개선 / 40
4. 50배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41
5. 과태료 부과절차 특례규정 마련 / 42
6.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절차의 조정 / 43
7.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구현 / 44

㉕ 국민생활과 선거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제 정비

1. 국민 일상모임의 제한 최소화 / 45
2. 확정장치 소음규제 강화 / 45
3.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금지 / 45
4.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의 명확화 / 46
5. 정당명의 여론조사금지기간 중 후보자추천을 위한 정당명의
여론조사 허용 / 47

㉞ 선거절차의 합리적 개선

1.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법정화 / 48
2. 명부작성권자의 조정 / 48
3. 선거인명부의 선거구단위 통합 활용근거 마련 / 48
4. 등록무효 및 입후보제한의 합리적 조정 / 49
5. 기초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기호 부여방법 개선 / 50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무투표당선제도 도입 / 50
7. 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의 공정성 강화 등 / 50
8. 투표(거소투표)의 비밀보장 강화 / 51
9.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보궐선거등의 동시실시 / 52
10.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전념성 확보 / 52
11. 당선소송 피고의 합리적 조정 / 52
12. 선거재해보상금 지급범위 명확화 / 53

㉟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제 정비 / 54

정당법 · 정치자금법

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 55

②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조정 / 55

③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

1. 선관위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 56

2.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를 위한 인터넷광고 허용 / 57

④ 정치자금범죄 자수자 특례규정 등 신설

1. 정치자금범죄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 / 58

2.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재판기간 특례규정 신설 / 58

⑤ 국고보조금 배분방법 등의 조정

1. 여성추천보조금 배분기준 조정 / 59

2.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 / 60

3. 정책연구소 해산시 국고보조금 처리규정 마련 / 60

4. 국고보조금의 양도·압류금지 명문화 / 61

⑥ 정치자금법상 절차규정 등의 합리적 개선

1. 후원금 모금 고지 광고 및 안내장의 게재내용 제한 완화 / 61
2.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및 잔여 영수증 반납기한 조정 등 / 62
3. 후원회지정권자 자격상실시 잔여재산 처분 등 / 63
4. 후원회 등록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후원금사용 허용 / 64
5. 예비후보자 자격상실시 회계보고기한 통일 / 64
6. 선거비용관련 과태료의 기탁금 등에서 공제 / 65
7. 반환 기탁금 등 인계 의무자의 범위 조정 / 65

⑦ 정치자금법 체계 정비 / 66

IV. 참 고 자 료 67

1. 재외선거제도 도입방안
2.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방안

I. 제 출 배 경

-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은 그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럼에도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 하는데 중점을 둔 나머지 선거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선거참여 및 알권리를 제약하고,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공직후보자 선출의 당내민주성이 요구되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원활한 조달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등 성숙한 국민의식과 변화된 선거·정치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 644·2005헌마360)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내년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아울러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한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2005헌마772)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음.
- 따라서 조속한 시일 안에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고, 국민과 정당·후보자 등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외부평가, 정당·후보자 등 선거참여자의 의견, 언론·단체에 의하여 보도·제기된 내용,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러 개선방안들을 연구하여 성숙한 국민의식과 발전된 정치문화 수준에 맞도록 참여·자유·공정의 이념이 상호 조화를 이룬 선진화된 정치관계법제를 마련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제2항에 따라 이 개정의견을 작성·제출하는 것임.

Ⅱ. 작 성 방 향

① 공직선거법

첫째,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소 투표나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중 원양어선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에 승선한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선거참여를 확대함.

둘째, 인터넷홈페이지·명함·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의 제한을 폐지하며, 외국인인 배우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간 대면을 통한 쌍방향 선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을 확대하고,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언론기관은 언제든지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비정규학력 게재,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 등의 인원수, 자동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함.

셋째, 대통령선거에 국정분야별 정책·공약의 비교를 위한 광고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등의 자료요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고 전과기록과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전과기록에 선거범 등의 벌금형을 포함하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별도로 허용하는 등 후보자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함.

넷째, 선거보도의 공정을 위하여 재·보궐선거에서도 관련 심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대상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포함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함.

다섯째, 선거비용제한의 실효성 확보와 선거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낙선자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제공받은 사람은 일괄하여 형벌 대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절차를 조정하고, 선거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여섯째, 종친회·동창회 등의 개최금지, 확성장치의 소음, 야간 여론조사 등의 규제를 국민생활과 선거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함.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 투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도록 조정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하는 등 선거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여덟째, 국민·정당·후보자 등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법률규정을 한글화하고, 한자어·전문용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며, 법률입안기준에 따라 장절 및 조문의 순서·배열 등을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② 정당법·정치자금법

첫째,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및 확정시기, 당내경선시 당원의 참여비율과 여론조사결과의 반영비율 등을 당헌·당규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둘째, 정당은 선거가 실시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선거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사무직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유급사무직원수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함.

셋째,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불법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하도록 하고, 당선무효 등에 해당하는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재판기간 특례규정을 둬으로써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다섯째, 대통령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도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기준에 반영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의 일부(20%)는 여성후보자추천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양도·압류를 금지하고, 정책연구소 해산시 보조금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그 본래의 용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함.

여섯째, 후원금 모금 광고 등의 게재내용 제한 완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및 회계보고기한 조정, 후원회 지정권자의 자격상실시 잔여재산과 반환받은 기탁금·보전비용의 처리방법 개선, 후원회 등록 전에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후원금 사용 허용 등 정치자금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일곱째, 국민·정당·후보자 등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여러 장·조문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내용을 묶어 규정하고, 법률입안기준에 따라 장 및 조문의 순서·배열 등을 조정하는 등 정치자금법 체계를 정비 하도록 함.

Ⅲ. 개 정 의 건

공 직 선 거 법

①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등 선거참여 확대

1. 재외선거제도 도입(신설)

가. 재외선거 도입범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영주권자 등 국외에 거주하는 자와 공관원·상사원·유학생·파병군인 등 국외에 체류하는 자(이하 “국외거주 재외국민”이라 함) 및 선거기간 중 국외체류가 예정되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하 “재외선거”라 함).

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국외거주 재외국민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내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주민등록 말소자)를 관할 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전 49일(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재외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도록 함.
-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는 헌법에 따라 사유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하고,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하며,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도록 함.

다.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공관이 소재한 도시와 그 인접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지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재외공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에 가서 국내부재자투표소의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도록 함.

- 그 밖의 지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과 재외투표소 투표대상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하여 본인의 부담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국제우편으로 부치도록 하되,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재외투표소 투표대상자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우편투표 대상자는 국내 거소에서 각각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직접 쓰는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함.

라. 재외선거의 투표용지 송부와 투표지 국내 회송 등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사이에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분관·출장소 포함) 또는 필요한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재외투표소 투표지는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우편투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우편투표 접수부에 날짜, 제출자, 제출방법 및 그 수를 기재한 다음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봉투수 등을 확인한 후 등기우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도록 함.

마. 재외선거의 개표방법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재외투표함에 투입·보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국내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외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 정당 또는 후보자의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은 인터넷광고와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연설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횟수를 제한하고, 그 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함.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국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되,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사.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 재외공관의 장을 당연직 “재외선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 및 국내 송부,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의 재외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을 총괄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거주 재외국민의 수와 재외선거의 관리여건, 재외선거관리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재외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하고, 재외선거관리관이 처리하는 재외선거 관련 각종 사무를 지원하도록 함.

2. 국내거주 재외국민 등의 선거참여 보장(신설)

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으로서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국가선거에서와 같이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함.

나.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 등에게 지방선거권 부여(§15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를 신고한 19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9세 이상의 자에게 해당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함.

제안 이유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644·2005헌마360 병합)의 취지를 반영하고, 이미 지방선거권을 부여받고 있는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외국 국적 동포는 물론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결혼이주민)에게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함.

3.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신설)

가. 선상부재자투표의 도입범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적 선박 중 원양어선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 승선한 선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에 출항하여 선거일까지 귀항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기간 중 선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상투표용지의 작성·전송 및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표지부분과 후보자의 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이 기재된 투표부분으로 구성된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9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수신된 투표용지는 선상부재자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선장이 보관하도록 함.

다. 선상부재자투표절차

- 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사이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에 투표장소를 설치·

운영하여 선상투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선상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투표소의 참관인에 갈음하여 1인 이상의 입회인을 두도록 함.

- 선장은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투표장소에서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고, 선상투표자는 투표장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그 장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투표지를 전송한 선상투표자는 기표된 투표부분을 봉투에 넣어 봉합·서명한 후 봉투 겉면에 표지부분을 첩부하여 선장에게 제출하고, 선장은 해당 선박의 모든 선상투표지 봉투를 포장하여 입회인과 함께 봉인한 후 귀항 즉시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라. 선상부재자투표의 접수 및 개표

- 선상부재자투표를 수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팩시밀리에는 수신자가 기표내용을 볼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고, 수신된 투표지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봉투에 넣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선상부재자투표를 국내 부재자투표와 함께 우편투표함에 투입한
후 선거일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도록 함.

② 자유롭고 선진화된 선거운동 구현

1. 온·오프라인 쌍방향 선거운동 활성화

가.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확대 (§59, §82의4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유권자는 동 행위가 금지되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일방적 홍보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유권자와 정당 또는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고 선거에 관한 균형잡힌 여론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나. 명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상시 허용 (§59, §60의3)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이라도 자신의 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예비후보자등록 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대면홍보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유권자와 대면 홍보기회를 부여하고 정책선거에 필요한 국민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활성화(§79)

- 현행은 연설원·사회자로 신고된 자만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현행 후보자마다 1대·1조 외에 선거연락소에도 1대·1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 현행은 후보자 외에 연설원·사회자로 신고된 자에 한하여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후보자 측에 연설원 등의 빈번한 교체신고에 따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설원·사회자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연설·대담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운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확성장치를 추가로 허용하고자 함.

2. 선거운동 주체·방법의 확대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60의3, §109)

(1)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 허용(신설)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을 말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2) 문자메시지 전송 허용(신설)

예비후보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를 이용하여 문자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3) 명함배부 주체·방법제한 등 조정 (§60의3①·②)

- 현행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명함 배부주체는 현행 유지 (§93① 단서)

- 배우자 등 가족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다른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현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을 포함한다)’로 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배우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후 선거의 조기과열·혼탁 등에 대한 우려보다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이 없어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불필요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축소(§60①)

(1) 공무원 등인 예비후보자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 허용

현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등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 등인 경우에도 후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2)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유급 활동보조인 허용(신설)

- 장애인의 선거운동 편의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법정선거사무원 외에 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확대(§68, §105②)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모두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짙은 색의 상의(上衣)·표찰·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입거나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 어깨띠 착용인원수 제한의 실익은 크지 아니한 반면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 현행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비용이 적게 들고 불·탈법의 소지가 적은 각종 소품을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선거가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함.

마. 동시지방선거시 선전벽보를 소형 현수막으로 대체 (§64, §206, §216)

4개 이상 선거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수·첨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행 선전벽보 대신 후보자가 일정 매수(읍·면·동마다 5매 정도) 이내의 소형 현수막(1m×1m 정도)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3. 미디어 이용 선거운동 활성화

가. 신문광고 색도제한 폐지 (§69②)

현행 신문광고는 흑색으로만 인쇄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문광고의 색도제한을 폐지하도록 함.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선(§82①)

현행은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8) 및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98)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보도가치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행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함(§82① 단서 삭제).

제 안 이 유

-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기관이 선거일 120일 전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관심사항을 취재·보도하려는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고 선거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견·정책의 검증·비교평가 등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이 언제든지 입후보예정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활성화 등

(1) 초청대상 및 후보자 초청기준 조정 (§82의2①·②·④)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현행의 후보자 외에도 정당의 대표자 또는 정당의 간부 등(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지역구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함)도 대담·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현행 대담·토론회 후보자 초청기준 중 ‘직전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서 ‘직전선거’를 ‘최근 4년 이내 실시된 해당 선거구역 전체를 포함하는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함)’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2)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 협조의무 (§82의2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중계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방송사는 다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터넷 언론사로부터 그 방송의 중계방송을 협조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8의7②)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KBS, MBC)·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위원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전문언론인 위원 3인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3년으로 함.

4. 선거운동 규제의 합리적 조정

가. 선거운동금지 공공기관의 범위 조정 (§87①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정부

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나. 선전벽보 등 선거홍보물 게재내용 수정 허용 (§64, §65, §250)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전벽보·선거공보에 게재된 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등(경력·학력·학위·상벌)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오기·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제출마감일까지 정정·삭제를 하려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미리 요청하도록 하되,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외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64, §65).

※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하되,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선전벽보·선거공보의 후보자 기본정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착오·오기 등으로 잘못 게재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비정규학력은 경력으로서 정규학력과 구분되도록 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그 교육과정명 및 수학기간과 정규학력 중 최종학력은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제한규정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함(§64, §250).

제 안 이 유

평생교육의 진흥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다.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 등의 인원수 제한 완화(§105①)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인사·연호 행위시 인원수 제한을

현행 2인에서 5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5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도록 함.

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완화 (§109①)

현행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이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함.

마. 인터넷실명확인제의 실효성 확보 (§82의6①)

현행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대상인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으로 하여 ‘글’ 외에 ‘부호·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③ 정책선거 풍토 조성 및 유권자의 알권리 신장

1. 정책·공약의 비교광고 신설 (§65, §69의2 신설)

대통령선거에서 전단형 선거공보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5개 국정분야별로 나누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문 등에 광고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도록 함.

※ 소요예산 : 22억원 정도(중앙일간지 11개사 5회 신문광고시 기준)

※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비용 : 95억원 정도

제안 이유

현행 대통령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한 후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전단형 선거공보를 연이어 발송하고 있어 유권자가 외면하는 등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가 정당 및 후보자간 정책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의 비교광고를 실시하도록 함.

2.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7)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로부터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신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함)는 정책선거 촉진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신설).

3. 전과기록 제출·공개범위 확대 (§49④, §60의2)

- 현행은 후보자등록시 후보자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공개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등록시부터 이를 제출·공개하도록 하되, 그 제출·공개대상에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벌금형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
-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4. 장애인을 위한 별도(1종)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등 (§65)

- 장애인선거권자를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는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면수는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적을 수 있도록 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다른 사항을 게재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신설).

제 안 이 유

현행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정책 등을 충분히 게재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탈법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예방·제재하고자 함.

5. 예비후보자등록시 학력증명서 제출 (§60의2, §49④)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교육관계법률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예비후보자등록시부터 후보자정보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판단할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함.

6.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및 반환제도 도입 (§60의2)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현행 선거별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행 기탁금에서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57의2②)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중에서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반환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은 반환할 예비후보자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도록 함 (§261⑥).

-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또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정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함.

④ 선거의 자유 확대에 따른 공정성 강화

1.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확대 등 (§8의2, §8의3)

- 선거방송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설치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하여 그 설치·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상·하반기 재·보궐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포함함)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함.
-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련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2.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강화 (§265)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대상 범죄의 범위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250②) 및 후보자비방죄 (§251)를 추가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위반시 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3.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제한대상직의 합리적 조정(§266)

현행 사립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일반 공무원의 공무담임제한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담임제한대상직에 포함하도록 함.

㉔ 선거비용제한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

1. 선거비용 범위의 명확화(§119, §120, §122의2)

- 선거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함(§119).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 이하 선거비용의 범위에서 같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제3자가 위에 열거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 안 이 유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정당 등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과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추가함(§120, §122의2).

-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예비후보자공약집(§60의4)·정책공약집(§138의2) 발간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관리비용, 후보자가 되려는 자(예비후보자 제외)의 명함 제작비용, 점자형 선거공보 등 국가부담 비용

- 선거비용에 포함하되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각종 소품(어깨띠 제외) 제작비용, 제출된 선전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정정에 소요된 비용, 후보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한 비용

2. 보전비용 등 환수의 형평성 확보 (§265의2)

선거범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선자도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서 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이 있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 자와 같이 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3. 기탁금 반환제도 개선 (§57, §261⑥)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전까지 사퇴하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57).
- 기탁금이 전액 국가 등에 귀속되는 후보자에게는 대집행비용 및 과태료를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함 (§57, §261⑥).

제 안 이 유

- 비례대표후보자도 지역구후보자와 같이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면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현행은 기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후보자 등에게는 부과한 과태료 및 대집행비용이 그 기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등에 귀속될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기탁금 반환대상 후보자와 귀속대상 후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4. 50배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261⑤)

현행은 금전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유형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1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제공받은 자는 일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안 이유

- 금전을 제공받은 자를 그 행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나 행위유형을 구별하여 차별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벌금형의 경우 과태료보다 가볍게 처벌되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우며, 재판단계에 이르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진술 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과태료부과 상한액이 5천만원임을 감안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제공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신 일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을 막고 선거 후 조속한 사회통합을 유도함.

5. 과태료 부과절차 특례규정 마련 (§261⑥~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 (§16·§17①) 중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적용하되, 의견제출기간은 “10일 이상”을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조정함.
- 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17③), 이의제기 (§20①·②) 및 관할법원 통보 (§21①),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24)의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이의제기 및 관할법원 통보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함.

제안 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관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인 때에는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동종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점 등 공직선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 일부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6.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절차의 조정 (§272의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54) 및 「통신비밀보호법」 (§13) 등 다른 법률의 관련내용과 부합하도록 다음 절차를 거치도록 함.

- 통신자료[이용자의 성명(ID 포함)·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함)·전화번호·이용기간·이용요금, 전화 설치장소·설치대수]는 직원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일시, 통신개시·종료시간, 이용자의 인터넷로그 기록자료, 정보통신망 접속 정보통신기기의 위치 확인자료,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는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 군사법원을 포함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도록 함.

7.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구현 (§260)

현행 양벌규정에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함.

제안 이유

2007. 11. 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2005헌가10)함에 따라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의 양벌규정도 그 책임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함.

⑥ 국민생활과 선거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제 정비

1. 국민 일상모임의 제한 최소화(§103①)

현행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모임을 선거기간 중에 일체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에서와 같이 다른 모든 선거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에 한정하여 개최를 금지하도록 함(① 삭제).

2.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102② 신설)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함)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를 할 수 없도록 함.

3.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금지(신설)

국민생활의 평온을 위하여 누구든지 야간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시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하도록 함.

4.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의 명확화

-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지위를 이용하여”를 삽입함(§86①2).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의 ‘공선법 제86조제1항제2호 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2008. 5. 29. 2006헌마1096)의 취지를 반영함.

-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 금지 대상을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로 하여 기부행위의 정의규정(§112①)에 있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과 일치시키도록 함(§86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이더라도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참석이 허용된 소속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등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함(\$86⑥).

제 안 이 유

법 제86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등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조항이 상호 모순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함.

5. 정당명의 여론조사금지기간 중 후보자추천을 위한 정당명의 여론조사 허용(\$108②)

현행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이 후보자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함.

㉞ 선거절차의 합리적 개선

1.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법정화(§24~§26)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월까지’로 조정하고,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선거일 전 9월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도록 함.

2. 명부작성권자의 조정(§37)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와 국내선거인명부 작성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권자를 현행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선거인명부의 선거구단위 통합 활용근거 마련(§37, §278)

투표율 제고 및 선거인의 투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권자가 제출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선거구단위로 통합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동시선거는 제외함)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선거(교육감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활용 등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시범 적용·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4. 등록무효 및 입후보제한의 합리적 조정 (§52, §53)

- 후보자등록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52①).
 - 소속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거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발견된 때
- 공무원등의 입후보제한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 (§53①·③).
 -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행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의 범위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상근 임원으로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그의 임기만료일부터 60일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5. 기초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기호 부여방법 개선 (§150⑤)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기호 부여방법을 현행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서 “소속 정당이 추천하는 순”으로 개선하도록 함.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무투표당선제도 도입 (§19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현행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같이 무투표당선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7. 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의 공정성 강화 등

- 현행 재·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방법은 모두 거소투표의 예에 따르고 있어 대리투표 등 투표부정의 우려가 크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와 같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대상자를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며, 부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201).

- 선거구(선거구역이 구·시·군보다 작은 경우 구·시·군) 밖에
거소가 있는 부재자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를 허용함.
- ※ 보궐선거등을 동시 실시하는 경우 거소투표대상자는 선거구역이 큰
선거의 예에 따르도록 함.
- 선거구 밖의 거소투표대상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
반장의 확인 없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부재자신고인을 3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30인 미만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투표자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신설).

8. 투표(거소투표)의 비밀보장 강화

-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166, §261).
- 거소투표에 있어 선거의 자유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자, 거소
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242).

9.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보궐선거등의 동시 실시 (§35, §203)

현행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보궐선거등을 분리하여 실시하던 것을 이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10.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전념성 확보(신설)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구민과의 약속 및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11. 당선소송 피고의 합리적 조정 (§223)

당선소청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당선소청이 인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송의 경우에도 위 당선소송의 피고 조정에 준하여 선거소청의 결정유형에 따라 그 피고를 조정함.

제 안 이 유

당선인이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당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등록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자신을 피고로 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12. 선거재해보상금 지급범위 명확화(§277의2)

선거재해보상금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신설).

⑧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제 정비

- 법규정을 한글화하고, 한자·한자어·전문용어 및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률이 되게 하며,
- 법률입안기준에 따라 장절 및 조문의 순서·배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정비안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임.

정당법 · 정치자금법

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정당법 §28)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시기와 후보자추천 확정기한, 당내경선시 당원의 참여비율과 여론조사결과의 반영비율 및 후보자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추천을 일정기한까지 확정하도록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사전 검증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②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조정(정당법 §30)

-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동안 중앙당과 시·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을 각각 50명의 범위에서 더 둘 수 있도록 하고,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은 정당활동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일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단순노무에 종사

하게 하거나,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 및 정당의 간부에게 그 직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제 안 이 유

선거준비·집행 등으로 업무가 많은 기간동안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유급사무직원 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③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 보장

1. 선관위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22)

- 법인·단체가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그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계속 제한하되,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의 100분의 2 중 많은 금액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은 허용하고, 그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며 그 내역을 공개함.

- 다만,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언론기관·언론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3사업년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는 제외함.

제 안 이 유

법인·단체가 투명성이 확보되고 특정 정당에 집중되지 아니하는 방법(제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탁금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자 함.

2.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를 위한 인터넷광고 허용 (§15)

대통령선거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후원금 모금 및 회원모집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인터넷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비교적 높은 후원회에 한하여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소액다수의 후원금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정치자금범죄 자수자 특례규정 등 신설

1. 정치자금범죄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 (§52의2)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도 자수자의 형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을 둬으로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효과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재판기간 특례규정 신설 (§55의2)

정치자금범죄 중에서 당선무효나 공무담임 또는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같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

제 안 이 유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정치자금범죄 중에서 당선무효, 공무담임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재판기간(공소제기 후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둌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방법 등의 조정

1. 여성추천보조금 배분기준 조정 (§26)

여성추천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은 현행을 유지하되, 그 배분·지급에 있어 현행 득표율과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20%는 지급대상 정당의 여성후보자추천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여성후보자추천비율을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 (§27)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100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2를 지급하도록 하고, 잔여분 배분대상 정당을 명확히 함.

제안이유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 정당추천이 허용된 모든 선거에서의 정당별 지지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정책연구소 해산시 국고보조금 처리규정 마련 (§30)

정책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소속 정당 또는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받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제안이유

정책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정당이 소속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한 보조금의 사용잔액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4. 국고보조금의 양도·압류금지 명문화(§27의2 신설)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제공하는 국고보조금이 그 본래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⑥ 정치자금법상 절차규정 등의 합리적 개선

1. 후원금 모금 고지 광고 및 안내장의 게재내용 제한 완화(§14, §15)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이나 회원모집을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안내장 등에 지정권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은 후원금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15),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14)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지정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로 일반인의 후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및 잔여 영수증 반납기한 조정 등(§5, §17)

- 정당이 등록취소 또는 해산하거나 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현행은 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을 해산일까지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회계보고시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 보고와 해산되는 경우 잔여 영수증 반납기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회계보고기한으로 일치시킴.
-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있어 본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본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을 연장하고, 각종 보고 등의 기한을 일치시키며,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으로써 정치자금 회계 업무처리와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3. 후원회지정권자 자격상실시 잔여재산 처분 등(§21)

- 후원회는 지정권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등으로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당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소속 정당,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정권자의 다른 후원회(같은 지정권자가 동시에 2 이상의 후원회를 둔 경우를 말하며, 연간모금한도액에 한함)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총액이 아닌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지정권자가 정당의 간부 등으로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하고, 모두 지출한 때에는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제안이유

후원회 해산 또는 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처분하되 처분시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잔여재산 처분 규정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정권자가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4. 후원회 등록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후원금사용 허용 (§21, §36)

현행은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는 후원금을 지출할 수 없으나,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인쇄물 제작이나 사무실 임차 등을 후원회등록 전에 계약한 경우와 같이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5. 예비후보자 자격상실시 회계보고기한 통일 (§40)

현행 예비후보자 또는 그 후원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산한 경우 회계보고기한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통일함.

제 안 이 유

예비후보자의 자격상실시 회계보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회계보고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회계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6. 선거비용관련 과태료의 기탁금 등에서 공제 (§51)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이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7. 반환 기탁금 등 인계 의무자의 범위 조정 (§58)

현행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정당의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거일 후에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당선자가 아니면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정당 등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낙선자도 국회의원 임기동안 또는 정당의 간부 등으로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하고, 모두 지출한 때에는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자도 계속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나 정당의 지원금을 선거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7] 정치자금법 체계 정비

- 여러 장·조문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정치자금 일반규정은 총칙에, 잔여재산 처분 등 유사한 내용은 하나의 장에 묶어 규정하고,
-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한편, 법률입안기준에 따라 장 및 조문의 순서·배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정비안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임.

IV. 참 고 자 료

1. 재외선거제도 도입방안

2.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1】

재외선거제도 도입방안

차 례

| | |
|------------------------|----|
| I. 재외선거 도입범위 | 1 |
| II. 재외선거 도입방안 | 2 |
| 1.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2 |
| 가. 명부작성의 원칙 / | 2 |
|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기간 / | 3 |
| 다. 대상별 등록신청 방법 / | 4 |
| 라.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 5 |
| 마. 변경 등록·철회 신청 / | 6 |
| 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 6 |
| 사.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 9 |
| 아. 재외선거인명부 수정 및 확정 / | 10 |
| 자. 재외공관장의 역할 / | 11 |
| 2. 재외선거 투표방법 | 12 |
| 가. 재외투표의 원칙 / | 12 |
| 나. 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 | 12 |
| 다. 투표절차 및 방법 / | 13 |

| | |
|--------------------------|----|
| 3. 재외선거 개표방법 | 17 |
| 가. 개표사무의 주체 등 / | 17 |
| 나. 재외선거 투표지의 유·무효 판단기준 / | 17 |
| 4. 국외선거운동 | 20 |
| 가. 선거운동의 원칙 / | 20 |
| 나. 선거운동의 방법 / | 20 |
| 5.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 | 21 |
| 가. 재외공관장의 선거관리책임 강화 / | 21 |
| 나. 중앙위원회 등의 재외선거 지원 의무 / | 21 |
| 다. 국외선거운동 지출비용의 처리 / | 21 |
| 라. 재외공명선거지원단 구성·운영 / | 22 |
| 마. 국외선거법의 공소시효 연장 / | 22 |

재외선거제도 도입방안

I 재외선거 도입범위

-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재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 국회의원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선거 및 비례대표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도입시 고려사항

- 지역귀속성이 약한 영주권자의 지역구선거 참여 허용의 타당성 여부
 - 영주권자가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 위장전입 효과 등 선거결과 왜곡 가능성
 - 근소표차로 당락 결정시 재외선거의 불공정을 이유로 쟁송 남발 가능성
-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 거주 국민에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와 같이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함.
 - 국외 거주 국민(체류자, 영주권자)은 주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함.

II 재외선거 도입방안

1.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가. 명부작성의 원칙 ⇒ 선거 때마다 등록신청·작성 (수시명부제)

- 수시명부제는 선거권자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단점이 있으나, 비선거시의 업무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명부가 선거 직전에 새로 작성되어 명부의 정확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방식임.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구·시·군의 장이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선거인명부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

선거인명부 작성권자 변경 사유

- 현행 구·시·읍·면의 장으로 할 경우 출국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는 등록기준지 읍·면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행정구역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에 따라 등록신청 및 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금치산 및 전과기록 정보가 등록기준지 구·시·읍·면으로 통보되지만 각종 데이터의 전산화로 구·시·군의 장도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없으며, 국내거소 신고자와 등록외국인에 대한 정보도 구·시·군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업무량을 고려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기·방법의 예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될 경우, 먼저 실시되는 선거(국민투표)에 재외선거인(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나중에 실시되는 선거(국민투표)의 등록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예)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해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기간

(1) 등록신청 대상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외거주 국민
 - 체류자(유학생, 상사원, 공관 주재원, 파병군인 등)
 - 영주권자
 - 영주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국내거소신고한 국내 거주자는 구·시·군의 장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직권으로 등재함.
-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가 예정되어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거주 선거권자

(2) 등록신청 기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로 함(2개월간).

등록신청기간 산정에 고려한 점

- 재외국민의 등록신청 편의 및 재외공관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등록신청기간을 2개월로 함.
- 선거일전 30일에 명부를 확정하여 선거일전 25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여야 하는 점과, 신청서 국내송부(10일), 명부 작성(10일), 열람 및 이의·불복신청과 결정기간(10일)을 감안하여 선거일전 60일에 등록신청을 마감함.

대통령 재선거 등의 등록신청·명부작성 등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2개월로 하여 등록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대통령 재선거 등은 헌법에 따라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등록신청기간을 비롯한 각각의 명부작성절차를 다음과 같이 단축하도록 함.

- ◆ 선거인 등록신청

-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 ◆ 명부작성, 열람·이의신청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선거일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5일간)

- ※ 임기만료 선거 : 선거일전 49일부터 10일간 작성, 선거일전 39일부터 1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선거일전 30일에 명부 확정

- 열람 및 이의·불복신청 : 절차를 생략함.

- ◆ 명부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확정함(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음).

다. 대상별 등록신청 방법

(1) 국외거주 선거권자(체류자, 영주권자)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내 주민등록지(주민등록자) 또는 등록기준지(주민등록 말소자)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선거일전 120일) 현재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함.

- ※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전 120일 후에는 선거인의 등록기준지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선거에 관한 한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 증명서(그린카드) 또는 장기체류 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사본을 첨부·제출하도록 하여 선거권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국외 파병 군인

- 국외 파병 군인(군무원 포함)은 국방부장관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파병 군인의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파병 군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입대한 후 파병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지, 국외거주 영주권자가 입대한 후 파병될 때에는 등록기준지임.

- 국방부장관이 위임을 받아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 등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가 예정되는 국내거주 선거권자

- 출국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구·시·군의 장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자는 주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등록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 주민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그 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생년월일, 성별 및 여권번호를 기재함.

- ◆ 주소 :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지, 그 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함.
- ◆ 거소 : 국외에서 우편물(투표용지)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기재하되, 반드시 영문(알파벳 대문자)으로 기재함. 이 경우 거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공관을 거소로 할 수 있으며, 거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관의 주소를 거소로 봄.

※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 영문주소를 해당 공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외국민에게 안내함.

마. 변경등록·철회 신청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후 주소·거소 등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의 만료일(선거일전 40일)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등록 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변경등록 및 철회 신청은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재외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전 49일(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10일간(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간) 작성함.

- 구·시·군의 장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있는지 여부(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 현재의 등록기준지를 말함), 선거권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선거권이 있는 자를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함.

선거권 결격사유 확인방법

◆ 금치산자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등록기준지 구·시·읍·면의 장이 금치산자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므로 이를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함.
- 주민등록자는 등록기준지에서 주소지로 그 명단을 통보하여 확인함.
-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은 그 수가 적으므로 명부작성권자가 등록기준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금치산자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함.

※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치산자에 관한 전산자료를 프로그램화하여 명부작성권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수형자의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자는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자료 프로그램으로 검색이 가능함.
- 선거범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선거권이 없는 자는 그 명단을 구·시·군의 장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화 조치가 필요함.

※ 검찰총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전산프로그램화하여 명부작성권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후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변경된 자는 등록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이 변경된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송부하도록 함. 다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등록신청 후 재외선거인의 등록기준지가 변경되더라도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지 아니함.

※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후에 재외선거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지 않고,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자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함.

※ 이 경우, 등재사실 통보 후 등록 철회를 신청 받아 명부에서 삭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이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착오 기재하여 등록신청서가 잘못 접수된 때에는 이를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작성하여 이중등재를 방지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는 재외선거인명부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며, 구·시·군의 장은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함.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 주민등록자

-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함.

◆ 국내거소신고자(지방선거 포함)

- 구·시·군의 장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함.
- 국내거소신고자는 선거인명부의 주민등록자 다음에 등재함.

◆ 외국인(지방선거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 준하여 작성함.
-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함.
- 외국국적동포 및 영주자격 취득 외국인은 선거인명부의 끝부분에 등재함.

사.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선거일전 40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열람기간 중 그 명부 사본을 열람 장소에 비치하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은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가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구술 또는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재외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곳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게시된 시점에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시·군 위원회는 불복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도록 함.

※ 구·시·군 위원회는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곳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게시된 시점에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아. 재외선거인명부 수정 및 확정

○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오기, 사망자, 국적 상실자(이탈자 포함) 그 밖의 선거권이 없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재외선거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명부를 수정하지 않고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0일에 확정되고,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도록 함.

○ 재외선거인명부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함.

※ 직권으로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와 달리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신청에 따라 작성하며, 이 명부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명부사본 교부 제도를 둘 필요가 없음.

자. 재외공관장의 역할

○ 대한민국 국민 여부[가족관계등록사항(구 ‘호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비자·영주권 증명서 또는 장기체류 증명서의 사본으로 확인], 등록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거소지 기재의 정확성, 의무적 재외투표소투표대상 여부 등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다음 접수부를 작성하고 등록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함.

※ 각 공관마다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신청인이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의 우편발송과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 거소는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기재하도록 안내함.

○ 재외공관장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접수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선거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2. 재외선거 투표방법

가. 재외투표의 원칙

-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재외 투표소투표(이하 “재외투표소투표”라 함)를 원칙으로 하여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득이 재외투표소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중앙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재외투표소투표를 하도록 함.
- 재외투표는 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직접 쓰는 방법(자서식)으로 함.
 - ※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기호·추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호 또는 추천 정당의 명칭을 쓰도록 함.
- 재외투표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함.

나. 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는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함.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일전 25일까지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선거인에게 직접 발송하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함.

- ※ EMS 발송이 불가능한 45개국(이탈리아, 남아공 등)과 EMS 프리미엄 권장 지역(우편물 배달 지연 국가) 17개국(러시아, 멕시코 등)은 EMS 프리미엄으로 발송함(EMS 프리미엄은 주소를 영문으로만 기재하여야 함).
- ※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거소를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표기한 경우, 구·시·군위원회는 동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를 관할 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본인이 직접 공관에서 수령하도록 함.
- ※ 파병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국방부장관이 파병된 군인에게 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다. 투표절차 및 방법

(1) 재외투표소의 설치

- 재외공관의 장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재외투표기간)의 기간 동안 재외선거인의 투표를 위하여 공관(분관·출장소 포함) 또는 필요한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 500인 이상인 공관(현재 101개)에 한하여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 국방부장관은 투표용지 및 투표관리 인력 수·회송의 안전성 등을 감안, 파병군인이 밀집하여 근무하는 부대에 재외투표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재외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관 건물이 아닌 곳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확정된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공관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공관(16개 공관, 재외국민 수 5만명 기준)

미국 8개(뉴욕·로스앤젤레스 등), 일본 4개(동경·오사카 등), 중국 4개(북경·칭다오 등), 그 외 지역 4개 등 20개임. 다만, 중국의 경우 공관 외에는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16개 공관이 추가설치 대상임.

(2)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

- 재외투표소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함.
-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은 투표시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봉투(회송용봉투 포함) 및 투표용지와 신분증(여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국내 부재자투표소 투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투표하도록 함.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투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는 여권만 인정함.

-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에는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우편투표 대상자와 구분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확인인을 날인하여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함.
-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두도록 함.

- 투표관리관은 매일의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 봉투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봉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인계함.
- 재외공관의 장은 인계받은 투표지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중앙위원회로 발송하고, 이를 받은 중앙위원회는 지체 없이 구·시·군위원회에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이 파병부대 주둔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투표관리관 등 인력 파견과 투표관리 용품 수·회송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파병부대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자수를 확인한 다음 회송용 봉투를 포장·봉인하여 이를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중앙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 재외투표소투표 대상 재외선거인이 국외에서 투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소의 참관인 신고권자는 선거일전 17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투표소마다 2인씩 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참관인 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인까지로 하되, 선정 절차는 국내 참관인 선정 절차에 따름.
- 재외공관의 장은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후보자만이 참관인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4인 이하를 때까지 선정한 자를 참관인으로 함.

(3) 우편투표

- 재외투표소투표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우편투표 중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우편투표 대상 재외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명 등을 직접 써서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우송하도록 하되,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소투표 마감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우편요금은 본인부담).

※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관의 경우 우편투표 접수마감일을 공고하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우편투표 접수부에 날짜, 제출자, 제출방법 및 그 수를 기재한 다음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중앙위원회에 송부함. 이 경우 재외투표소투표 마감일 후에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정기 외교파우치 송부 일정에 따라 중앙위원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위원회는 재외투표가 도착되면 지체 없이 봉투수 등을 확인한 후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위원회에 발송함.
- 우편투표대상자가 국외에서 투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재외선거 개표방법

가. 개표사무의 주체 등

- 재외선거 개표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도록 함.
- 구·시·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국내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외선거 투표지의 유효·무효 판단기준

(1) 무효로 하는 투표

(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

- 2인 이상의 후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것
-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것
- 어느 후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 사망·사퇴한 후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것
- 후보자의 기호·성명, 정당명칭 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 다만, 직업(국회의원)·신분(정당 총재)·존칭(님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유효로 봄.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

- 2개 이상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기재한 것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의 명칭·기호를 기재한 것
- 어느 정당의 명칭·기호를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 정당의 명칭·기호 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한 것

(다) 공통사항

- 정규의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회송용 봉투가 봉합되지 아니한 것
- 회송용 봉투 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문서나 물품 등이 들어 있는 것
-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
- 선거인이 자신이 투표한(재외투표소투표에 한정함) 투표지를 공개한 것
- 한글·한자 외에 외국어로 기재하거나 영문약칭·이니셜로 기재한 것
 - ※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무효처리함.
- 재외투표소 투표자의 회송용 봉투에 확인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재외투표소 투표자가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2) 유효로 하는 투표

(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

-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성 미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 후보자의 성만 기재하였으나 같은 성을 가진 후보자가 없는 경우
※ 외국에서는 성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후보자 추정이 가능하므로 유효로 인정함.
-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외에 정당명칭을 기재한 것
- 한 후보자의 성명 등을 2회 이상 기재한 것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

- 정당의 명칭을 약칭으로 기재한 것
- 한 정당의 명칭·기호를 2회 이상 기재한 것
- 기호를 한글 또는 로마자로 기재하였으나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다) 공통사항

-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
※ 한글 맞춤법상 오류일 뿐 후보자 추정이 가능함.
- 투표지가 오손·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선거인의 투표

4. 국외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의 원칙

- 누구든지 재외선거인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선거운동의 방법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국내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대통령선거의 경우 각 1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각 5회 이내 광고하는 방법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인이 각각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후보자가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1항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하는 방법

5.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

가. 재외공관장의 선거관리책임 강화

- 재외선거의 관리집행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선거관리관(가칭)을 두되,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당연직 재외선거관리관이 되도록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관이 처리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 재외투표 그 밖의 재외선거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나. 중앙위원회 등의 재외선거 지원 의무

- 중앙위원회 및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소 설치·운영기간, 투표절차, 후보자 등록상황 기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홍보하도록 함.
- 중앙위원회는 재외국민 수 및 선거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한 지역에는 각급 위원회 직원을 주재관 등으로 파견하여 재외국민 대상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하고, 재외선거관리관이 처리하는 재외선거 관련 각종 사무를 지원하도록 함.

다. 국외 선거운동 지출비용의 처리

- 국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함.
- 다만, 정당·후보자 등이 국외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보전비용, 당선무효와 관련되고 이들은 모두 회계보고의 정확성에 대한 엄격한 조사·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조사·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거비용으로 볼 경우 회계보고의 신뢰성,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라. 재외공명선거지원단 구성·운영

○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시 투표참여 홍보 및 공명선거 추진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재외공명선거지원단(가칭)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당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 연장

○ 현행의 짧은 공소시효로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므로 공소시효를 도피범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여 국외선거범이 귀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덧붙임 1. 재외국민 등의 공직선거 도입범위 일람표 1부.
2.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1부.

재외국민 등의 공직선거 도입범위 일람표

| 선거별 대상별 |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재선거, 궐위선거) |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 | | 지방선거 |
|---|---|----------------------------|------------------|------|------|
| | | | 지역구 | 비례대표 | |
| 재외국민 (국외거주 국민) | 체류자 (선거기간중 국외 체류 예정 국내 거주자 포함) | 도입 | 도입 | 도입 | 미도입 |
| | • 국내거주자에 한해 부재자신고를 허용한 것(공선법§38①)은 위헌[현재] | | | | |
| | 영주권자 | 도입 | 도입 | 도입 | 미도입 |
| •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투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공선법§37①)은 위헌[현재] | | | | | |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등 | 국내거주 재외국민 | 도입 | 도입 | 도입 | 도입 |
| |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국정선거(대선, 국선)의 선거권과 지방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을 결정하도록 한 것(공선법§15②·§16③·§37①)은 위헌[현재] | | | | |
| |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 | 미도입 | 미도입 | 미도입 | 도입 |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 | | | | |
| 기타 | 영주 체류자격 취득한 외국인 | 미도입 | 미도입 | 미도입 | 기도입 |
|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 | | | |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국적 취득전) | 미도입 | 미도입 | 미도입 | 도입 |
| • 영주 체류자격 취득한 외국인과의 형평 고려 | | | | | |

※ 재 외 국 민

- 체류자 : 국외여행자,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약 155만명 추정)
- 영주권자 : 영주권 취득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약 145만명 추정)

※ 국내거소신고자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6]
(약 10만여명 : 재외국민 6만1천명, 외국국적동포 3만9천명)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약 400만명 추정)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 시행 일정 | 선거일전 120일 | 60일 | 59일 | 50일 | 49일 | 40일 | 39일 | 35일 | 34일 | 30일 | 29일 | 28일 | 27일 | 25일 | 24일 | 14일 | 9일 | 선거일 | | | | |
|-----------------|-----------------|-----|-----|------------------|---------------------|-----|----------------|-----|-----|-----------------------|-------------------|-----|-------------------|-----|-----|---------------------|------------------|-----|------------------|--|--|--|
| 선거 (투표)별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기만료선거 | 120 | 60 | | | 49 | 40 | 39 | 35 | | 30 | 29 | | | 25 | | 14 | 9 | | | | | |
| | 선거인 등록신청(60일간) | | | 명부작성(10일간) | | | 열람 및 이의신청(5일간) | | | 명부 확정 | | | 투표용지 발송(5일이내) | | | 재외투표소 투표 (6일이내) | | | 선거일 | | | |
| | ← 등록신청서 국내 송부 → | | | | ← 이의 및 불복신청 결정·통지 → | | | | | | ← 투표용지 발송(5일이내) → | | | | | | ← 재외투표소 투표지 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투표 및 우편투표지 회송 → | | | | | | |
| 재 선거· 궐위선거 등 | | | | | | | | | 34 | 30 | 29 | | | 25 | | 14 | 9 | | | | | |
| | | | | 사유확정일 선거일전 40일까지 | | | | | | 명부작성(5일간) | | | 투표용지 발송(5일이내) | | | 재외투표소 투표 (6일이내) | | | 선거일 | | | |
| | | | | 선거인 등록신청(20일간) | | | | | | * 열람 및 이의·불복 신청 절차 생략 | | | 명부 확정 (선거일전 30일) | | | | | | | | | |
| | ← 등록신청서 국내 송부 → | | | | | | | | | | | | ← 투표용지 발송(5일이내) → | | | | | | ← 재외투표소 투표지 회송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투표 및 우편투표지 회송 → | | | | | | |

【참고자료 2】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방안
(공 직 선 거)

차 례

| | |
|---------------------------|---|
| I. 도입 범위 | 1 |
| 1. 도입 대상 | 1 |
| 2. 신고대상 선원 | 1 |
| II.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1 |
| 1. 부재자신고 안내 | 1 |
| 2. 부재자신고 방법 | 2 |
| 3. 명부작성 방법 | 2 |
| III. 투표용지 작성·전송 | 2 |
| 1. 선상투표용지 작성·전송 | 2 |
| 2. 선상투표용지 보관 등 | 3 |
| IV. 선상투표 관리 | 3 |
| 1. 선상투표의 관리책임자 | 3 |
| 2. 선상투표기간 및 투표장소 설비 | 3 |
| 3. 선상투표 절차 | 4 |
| V. 선상투표지의 수신 및 개표 | 5 |
| 1. 시·도위원회의 투표지 수신 | 5 |
| 2. 구·시·군위원회의 접수·개표 | 6 |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방안

I. 도입범위

1. 도입대상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도입함.

※ 지방선거와 일부지역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제외

2. 신고대상 선원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에 출항하여 선거일까지 귀항할 수 없는 원양어선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 승선한 선원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자

※ 2007. 12월 기준 10,187명 (외항상선 742척 8,042명, 원양어선 338척 2,145명)

II.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1. 부재자신고 안내

명부작성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조를 얻어 선박에 부재자신고서 접수를 위한 구·시·군별 팩시밀리 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선상투표와 관련한 안내사항 게시

2. 부재자신고 방법

부재자신고기간 중 선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고함.

※ 신고인 서명과 선장의 확인은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 투표 후 전송한 투표지의 확인 서명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함.

3. 명부작성 방법

일반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절차에 따르되,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각각 “부재자” 및 “선상투표자”로 기재함.

Ⅲ 투표용지 작성 · 전송

1. 선상투표용지 작성 · 전송

- 선상투표용지는 구·시·군위원회가 각 선상투표자별로 작성하되, 선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표지부분(좌측)과 정당의 명칭·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기표란이 기재된 투표부분(우측)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별지 서식 참조》
- 작성된 투표용지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전 9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함. 다만, 팩시밀리로 발송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를 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2. 선상투표용지 보관 등

-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한 선장은 이를 봉투에 넣어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실시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 구·시·군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상황을 투표용지작성·관리록과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에 기재함.

IV 선상투표 관리

1. 선상투표의 관리책임자

- 선장에게 선상투표용지의 수신·교부, 투표장소의 설치, 입회인 선정 등 투표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함.
- 선장은 1인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 선상투표의 전체과정을 참관하도록 함.

2. 선상투표기간 및 투표장소 설비

- 선상투표는 선거일전 9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의 사이에 선장이 당해 선박의 선거인수와 운항사정 등을 감안하여 모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실시함.
- 투표장소는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설비하되, 기표 및 팩시밀리 전송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3. 선상투표 절차

- 선장은 선상투표용지 표지부분의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후 선거인에게 선상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선거인은 선장 앞에서 표지부분의 선거인 서명란에 서명한 후 기표장소로 이동하여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함.
- 기표를 마친 선거인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시·도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함.
 - ※ 투표지에 투입방향을 표시하여 수신 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
- 팩시밀리 전송 후 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은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봉합부분에 서명하고, 봉투겉면에는 표지부분을 부착하여 선장에게 제출함.
 - ※ 투표부분 투입봉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박회사나 출항 신고지에 비치하고 선장 등에 널리 홍보하여 출항 전에 비치하도록 사전에 조치
-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1인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 선상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투표가 종료되면 제출 받은 선상투표지 봉투를 포장하여 입회인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함.
- 선장은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한 후 귀항 즉시 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봉투 등을 관할 시·도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선상투표지 송신 요금 보전

선박회사는 선장으로부터 수신한 팩시밀리 송신 기록지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시·도위원회에 부재자신고와 투표지 송신을 위하여 사용한 요금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시·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비용을 선박회사에 보전함.

V 선상투표지의 수신 및 개표

1. 시·도위원회의 투표지 수신

- 시·도위원회는 선거일전 9일부터 선거일전 5일(오후 4시)까지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지 수신을 위한 장소를 설비함.
- 선상투표지 접수기간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을 선상투표지 수신 장소에서 참관하게 함.
- 시·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팩시밀리를 설비함.
 - 기기 자체 저장매체에 수신일시, 송신 팩시밀리번호 등이 저장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수신자가 투표내용을 알 수 없도록 선상투표지 수신용지의 투표부분이 봉합되어 출력되는 기술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
- 수신된 선상투표지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부분을 절취한 후 별도의 선상투표지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봉투 앞면에 표지부분을 부착한 후 이를 구·시·군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부재자

투표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함.

※ 구·시·군위원회는 각 선상부재자투표 신고인의 선상투표지 회송용 봉투를 시·도위원회에 송부하여 수신 장소에 사전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위원회는 수신기간 중 매일 1회 이상 수신된 선상투표지를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위원회에 이송함.
- 시·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 수신록을 비치하고, 선상투표지 수신 상황을 기재하여야 함.

2. 구·시·군위원회의 접수·개표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송부된 봉투를 접수하여 국내 부재자투표와 함께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부재자 투표발송·접수록에 기재한 후, 개표시 다른 거소투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표함.

공개된 투표지 등의 처리

- 선거인의 과실로 인한 공개는 무효로 처리하되, 선거인의 과실 없이 투표 부분이 공개된 투표지는 유효 처리
 - ※ 선거인이 선상투표지를 반대 방향으로 투입하여 수신시 표지부분에 투표부분이 출력되어 투표내역이 공개되었다면 무효처리
- 수신된 투표지의 선거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봉투 앞면에 선거인 식별이 불가능한 투표지가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하고, 선상투표지 수신록과 함께 별도 보관

덧붙임 : 선상투표용지 서식

표지부분

이 서류를 받은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찢거나 버리거나 훼손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선거 선상투표 (선거구)

I. 선거인 확인사항

| 선거인성명 |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번호 | 선거인 서명 | 선장 서명 | 입회인 서명 |
|-------|--------------------------|-----------|----------|-----------|
| 홍길동 | ○○구시군 ○○읍면동 제 ○ 투 ○○번 | | | |

II. 투표방법

- ◆투표는 우측 굽은 선 기표란 안에 볼펜 등 지울 수 없는 필기구로 “○”표를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기표한 투표지는 즉시 원편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 00) 000-0000 번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전송한 투표지는 가운데를 잘라 투표부분은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봉투의 겉면에는 표지부분을 부착합니다.
- ◆봉투의 봉합부분에는 본인이 서명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십시오.

III. 투표시 주의사항

- ◆투표는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기표하거나 투표지를 전송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투표지를 팩시밀리로 전송할 때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수신할 때 기표내용이 공개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 ◆투표지는 한국시간으로 월 일 오후 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부분

○○○선거투표 (선거구)

| | | | |
|---|-------|-----|--|
| 1 | ○ ○ 당 | 김○○ | |
| 2 | △ △ 당 | 강○○ | |
| 3 | □ □ 당 | 송○○ | |
| 4 | ♠ ♠ 당 | 백○○ | |
| 5 | ◇ ◇ 당 | 이○○ | |
| 6 | ♡ ♡ 당 | 나○○ | |
| 7 | ♣ ♣ 당 | 조○○ | |
| 8 | 무 소 속 | 박○○ | |

투표후
자르는
선

← 팩시밀리
투입방향

투표관리관